

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· 이소라 부위원장님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
의원입니다.

-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 중, 고
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또 다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만
했던 국군포로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발의한 ‘서울특별시 국군포로
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서울특별시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
일찍이 보장하고 그분들의 지원에도 아낌없이 임하고 있음은
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참전용사 중에서도 적지에 억류되어
43호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무시당한 채 희생을 강요당

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국군포로를 위한 법적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

□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그 숭고한 정신에 감히 상하는 없으며 우리 국토를 피로 물들인 주적을 멸하기 위한 그 함성에 경중이란 없습니다. 다만, 적진에 끌려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귀환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가족들과 함께 버텨온 또 다른 참전용사인 그들은 마땅히 다르게 존중받아야 합니다.

□ 대한민국에 무사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은 ‘국군포로송환법’에 의거 등록포로로 등록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사는 시민이 되었습시다만, 아직 그들을 위한 예우에 대해 법적 자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.

□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참전용사 중에서도 적진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신념을 잃지 않고 견뎌낸 채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미처 마련하지 못한 부분을 서울특별시가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며, 특히나 지원사업에 대한

감사를 넘어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관한 조사와 연구까지 가능한 시립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적진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그 의지를 지켜낸 국군포로와 그의 가족이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예우를 존중받고 이제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살펴 주십사, 단 한 명의 국군포로만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땅을 지켜낸 그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